

의안번호	제 $\surd$ 호
의 결 년 월 일	2006년 8월 1일 【 제 171 회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surd$ 월 $\surd$ 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06. 7. 21

제 출 자 : 음성군수

1. 안전명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대소도서관 신축, 무보험 자동차 관리업무 신규발생,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 2006. 6.30.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팀 설치,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 부읍·면장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개정주요골자

- 대소 도서관 운영 업무분장 : 문화공보과
- 무보험자동차 운행사 범칙금부과 및 사건송치 업무분장 : 공업경제과
-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 : 이전신축
- 공영개발사업팀 설치 및 업무분장
-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 신설(구조, 치료, 사육 및 방생 업무)
-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둠(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4. 조례개정안 : 별지붙임

5. 신·구 조문대비표 : 별지붙임

6. 조례개정근거법령 및 공문

- 음성군 정원 승인(도 자치행정과-4906 (2006. 5. 3))
-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 요청(보건소-921(2006.1.27))외 1건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통보(도 자치행정과-900 (2006.1.20))

7.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입법예고 : 2006. 6. 7. ~ 6.26, 2006. 6.21.~7.10

- 입법예고실시/제출의견 없음

9. 제안자 의견

- 대소도서관 신축, 보건지소 이전신축,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 무보험 자동차 관리업무 신규발생, 공영개발사업팀 설치와 규칙으로 정하였던 부읍·면장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호 문화공보과장 “카. 기타 체육시설이용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업무

파. 도서관 도서 구입 및 관리 업무

제9호 공업경제과장 “타.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무보험 자동차 운행사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업무

제4조(설치)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단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설치)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단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관사무) “1. 상하수도사업소” 다음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 공영개발사업팀

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나. 택지조성 업무

다.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3. 환경사업소” 다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가. 야생동물 구조 및 포획 업무

나. 야생동물 치료 및 재활훈련 업무

다. 구조한 야생동물 사육 및 자연복귀 업무

라. 야생동물 질병조사 업무

마. 멸종위기 야생동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업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읍·면장)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① 생략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문화공보과장 가. ~ 카. (생략) (신설) 9. 공업경제과장 가. ~ 타. (생략) (신설)	제3조(실과의 설치)① 생략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문화공보과장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업무 파. 도서관 도서 구입 및 관리업무 9. 공업경제과장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무보험 자동차 운행자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업무
제12조(소관사무)생략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자(생략) 2. 공영개발사업소 가. 공영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다.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라. 사업소 재산관리 마. 그 밖에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사업소 (생략) 4. (신설)	제12조(소관사무) 생략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자(현행과 같음) 2. 공영개발사업팀 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나. 택지조성 업무 다.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3. 환경사업소 (현행과 같음) 4.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가. 야생동물 구조 및 포획 업무 나. 야생동물 치료 및 재활훈련 업무 다. 구조한 야생동물 사육 및 자연 복귀 업무 라. 야생동물 질병조사 업무 마. 멸종위기 야생동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업무
제15조(읍·면장)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읍·면장)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둔다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명 칭	소재지	관할구역
삼생지구	음성읍 삼생리 738	동음1·2, 초천1·2·3·4, 삼생1·2·3·4	좌동	음성읍 삼생리 767-6	좌동
내곡지구	금왕읍 내곡리 100-1	내곡, 쌍봉1·2, 사창, 구계1·2	좌동	금왕읍 내곡리 71-7	좌동
조촌지구	원남면 조촌리 565-1외1	조촌1·2·3, 삼용1·2, 덕정리	좌동	원남면 조촌리 565외1	좌동
봉현지구	맹동면 봉현리 339-2	봉현1·2, 마산1·2	좌동	맹동면 봉현리 333	좌동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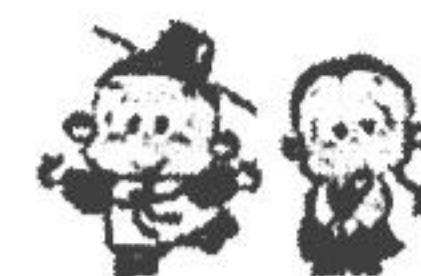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0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공영개발사업소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3	공영개발사업팀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3
(신설)		야생동물구조관리 사업소	금왕읍 백야리 산 13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 청 북 도



수신 음성군수(행정과장)

(경유)

제목 음성군 정원 승인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962호(2006.5.2.)와 관련입니다.

2. 음성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을 불임과 같이 승인하니 자치법규 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정원 연장신청은 불승인하니 여유기구로 전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원승인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사



수신자

05/03

★지방행정주사 조연형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영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906 (2006.05.03.)

접수 행정과-6893 (2006.05.0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523 전송 043) 220-2539 / joyh8887@cb21.net / 공개

정 원 승 인 서

< 음성군 >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문화공보과		지방주사보	1	도서관
		지방서기	1	
		지방서기보	1	
공업경제과		지방서기	1	통고처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소장	지방주사	1	야생동물 구조센터
		지방주사보	4	
		지방서기	1	
		지방기능9급	1	
계			11명	

※ 시행일 : 조례·규칙 개정 공포일

○ 승인되는 정원의 직렬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자율채정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보건소



수신 행정과장

(경유)

제목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 요청

1.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음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3항 “별표1”의 내용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재지 변경내역

구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당초	삼생지구	음성읍 삼생리 738번지	동읍 1?2리, 초천 1?2?3?4리, 삼생 1?2?3?4리
변경	상동	음성읍 삼생리 767-6번지	상 동
당초	내곡지구	금왕읍 내곡리 100-1번지	내곡리, 쌍봉 1?2리, 사창리, 구계 1?2리
변경	상동	금왕읍 내곡리 71-7번지	상 동
당초	봉현지구	맹동면 봉현리 339-2번지	봉현 1?2리, 마산 1?2리
변경	상동	맹동면 봉현리 333번지	상 동

붙임 : 일반건축물대장 3부.(별송) 끝.

보 건소장장 채 식

수신자

지방보건주사보

전병태

보건행정담당

김동섭

소장

반채식

협조자 방문보건 담당 오재선

시행 보건소-921 (2006.01.27.)

접수 행정과-2096 (2006.02.07.)

우 369-807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06-4

/ http://www.es21.net

전화 043- 871-3613 전송 043-871-3619 / gochu@es21.net

/ 공개

【 고추하면 음성, 음성하면 고추!!! 】



음성군 보건소



수신 행정과장

(경유)

제목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정비요청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3항 “별표1”의 내용중 소재지 변경사항이 있어 조례정비를 요청합니다.

2. 소재지 변경내역

구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당초	조촌지구	원남면 조촌리 565-1번지외1	조촌 1?2?3리, 삼용 1?2리, 덕정리
변경	상동	원남면 조촌리 565외 1필지	상 동

끝.

음 성



수신자

지방보건주사보

전병태

보건행정담당

김동섭

소장

반채식

협조자

시행 보건소-4886 (2006.05.10.)

접수 행정과-7218 (2006.05.10.)

우 369-807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06-4

/ <http://www.es21.net>

전화 043-871-3613 전송 043-871-3619 / gochu@es21.net

/ 공개

【 고추하면 음성, 음성하면 고추!!! 】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 청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등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46호(2006.1.17)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을 개정(법률 제7846호, '06.1.11)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소 설치 승인권 폐지(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05.8.5)와 연계하여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읍·면 등의 하부행정기구 설치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조직관리지침을 통보하니, 지침의 준수·이행 등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하부행정기구 설치 승인권 폐지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

가. 개정내용(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시·도지사의 승인 폐지)

나. 적용대상

○ 하부행정기구 :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행정기구로서 자치구 아닌 구의 과·담당관, 읍·면의 부읍·면장,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 등

※ 정원채정기준은 종전과 같음

다. 규정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이 법 시행당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하부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 반영

○ '05.10.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091호) 개정으로 도입된 읍·면의 부읍·면장제를 이미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개정시 반영하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조례로 규정.

끝.

충 청 북 도 사



수신자 시군(조직관리)

01/20

★지방행정주사보 김대진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영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00 (2006.01.20.)

접수 행정과-1262 (2006.01.2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